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4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김준혁

허성무 · 송옥주 · 서미화

김종민 • 민병덕 • 임미애

박지원 • 이기헌 • 박희승

이재관·박해철·정진욱

김 유 • 조계원 • 권향엽

정일영 · 전진숙 · 송재봉

최민희 · 양부남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38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각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각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 또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

접객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	2
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u>품접객업</u> 을 하는 자(이하 "식	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
품접객영업자"한다)에 대한	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
위생관리 상태 점검	<u>객업</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	
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여
	<u>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
	업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 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4. (생략)
-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하려는 경우
- 6. (생략)
-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1.・2. (현행과 같음)
3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
<u>품접객업</u> 4. (현행과 같음)
5
<u>제36조제1항</u>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
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6. (현행과 같음)

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8.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 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 1. (생략)
-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생략)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 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품섭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
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
<u>객업</u>
8.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제36조제1항제</u>
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
<u>성전용 식품접객업</u> 3. (생 략)
4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포함한다)가 <u>제36조제1</u>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생략)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u>식품접객</u> 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 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③ (생략)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 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 3. (생 략)
- ⑤ ~ ⑧ (생 략)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 ·② (생 략)
 -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3)

<u>제36</u> 조제 <u>1</u>
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
른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5. (현행과 같음)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식품접객
업 또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日 上し O U O 「日日「日日
 ② ② (청刮기 가야)
②·③ (현행과 같음)
4
<u>제36조제1항</u>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 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 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 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품접객업 또는 같은 항 제3호
의2에 따른 여성전용 식품접
<u> 객업</u>
④·⑤ (현행과 같음)